

[별표 6] <개정 1999.8.6, 2002.9.18, 2005.6.30, 2005.11.25>

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80조제1항관련)

가.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영업정지 기 간	과징금의 금 액
1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	법 제82조제1항제1호	4월	4,000만원
2.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1호	3월	3,000만원
3.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2호	4월	
3의2.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, 기술자보유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	4월	
4.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3호	4월	4,000만원
5.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4호	2월	2,000만원
6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1조의 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	1월	1,000만원
7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3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·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	1월	1,000만원

8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	3월	3,000만원
9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6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	3월	3,000만원
10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, 검사,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·라목	1월	1,000만원
11.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	2월	2,000만원
1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.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.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.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	법 제82조제1항제6호	4월 3월 2월	4,000만원 3,000만원 2,000만원
13.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	법 제82조제2항제5호	8월	3억원
14.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	법 제82조제2항제5호	6월	2억원
15.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	법 제82조제2항제5호	4월	1억원
16.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	법 제82조제2항제5호	2월	5천만원

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	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

나.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

위 반 행 위	해 당 법조문	영업정지기간	과징금의 비율(%)			
			5천만원까지	1억원	5억원	30억원 이상
1.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1 호	8월	30	24	16	8
1의2.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1 호의2	6월	24	18	12	6
2.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	8월	30	24	16	8
3.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	6월	24	18	12	6
4.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(재하도급을 포함한다)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	6월	24	18	12	6
5.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	4월	16	12	8	4
6.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2 호	4월	16	12	8	4
7.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3 호	2월	8	6	4	2

7. 삭제 <2005.6.30 : 시행 일 2008.1.1>						
8.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 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때	법 제82조 제 2 항 제 4 호	6월	24	18	12	6

비 고

1.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(直線補間)의 방법에 의한다.
2. 직선보간(直線補間)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.

다. 법 제83조의 규정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영업정지기간
1.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	법 제83조제2호	6월
2.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	법 제83조제8호	6월
3.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작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	법 제83조제9호	1년
4.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	법 제83조제10호	6월
5.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(이하 "수수액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	법 제83조제12호	
가.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		8월
나.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		6월
다.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		4월
라.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		2월

비 고

1.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.
2.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.
 - 가.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
 - 나.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(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
 - 다.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